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7억 5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7억 5천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7억 5천 7백만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전년도 100.0%)임.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753,768	757,434	757,318			116	100.5	100.0
세외수입	98,024	101,690	101,574			116	103.6	99.9
경상적세외수입	6,047	9,713	9,597			116	158.7	98.8
이자수입	6,047	9,713	9,597			116	158.7	98.8
기타이자수입	6,047	9,713	9,597			116	158.7	98.8
임시적세외수입	91,977	91,977	91,977				100.0	100.0
보조금반환수입	91,977	91,977	91,977				100.0	100.0
시·도비보조금등반 환수입	91,977	91,977	91,977				100.0	100.0
보조금	652,744	652,744	652,744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652,744	652,744	652,744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652,744	652,744	652,744				100.0	100.0
국고보조금	652,744	652,744	652,744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	3,000	3,000				100.0	100.0
보전수입등	3,000	3,000	3,00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3,000	3,000	3,000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3,000				100.0	100.0

※ 결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2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5개 사업에 6억 5천 3백만원을 수령하여 6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2,517.35㎡ 4억 5천 7백만원,
- 기타 2건 3천 4백만원,
- 총 4억 9천 1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91			491
행정 재산	계	491		491
	공용재산	491		491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4백만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4억 4천 7백만원으로
- 총 수량 97개 현재액은 4억 4천 7백만원임.

〈 2022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21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2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수량	95	2	0	0	0	2	0	0	0	0	0	97
						금액	442,267	4,333	0	0	0	4,333	0	0	0	0	0	446,600
1	4010 1701	냉방기	대	3	10	수량	3	0	0	0	0	0	0	0	0	0	0	3
						금액	4,933	0	0	0	0	0	0	0	0	0	0	4,933
2	4010 1787	냉난방 기	대	9	9	수량	9	0	0	0	0	0	0	0	0	0	0	9
						금액	31,255	0	0	0	0	0	0	0	0	0	0	31,255
3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39	6	수량	39	1	0	0	0	1	0	0	0	0	0	40
						금액	54,484	803	0	0	0	803	0	0	0	0	0	55,287
4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 터	대	6	8	수량	6	0	0	0	0	0	0	0	0	0	0	6
						금액	88,521	0	0	0	0	0	0	0	0	0	0	88,521
5	4511 1893	영상정 보디스 플레이 장치	대	36	6	수량	36	0	0	0	0	0	0	0	0	0	0	36
						금액	256,968	0	0	0	0	0	0	0	0	0	0	256,968
6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비 디오카 메라	대	1	9	수량	1	0	0	0	0	0	0	0	0	0	0	1
						금액	2,211	0	0	0	0	0	0	0	0	0	0	2,211
7	5216 1545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대	1	6	수량	1	1	0	0	0	1	0	0	0	0	0	2
						금액	3,895	3,530	0	0	0	3,530	0	0	0	0	0	7,425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7억 5천 4백만원) 대비 100.5% 수납된 7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7억 5천 5백만원) 대비 0.3%(2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징수결정액(7억 5천 7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100.0%(전년도 100%)임.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음.

〈202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		예산대비		2021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753,768	757,318	3,550	100.5	754,795	2,523	100.3
세 외 수 입	98,024	101,574	3,550	103.6	136,341	-34,767	74.5
경상적세외수입	6,047	9,597	3,550	158.7	1,897	7,700	505.9
임시적세외수입	91,977	91,977	0	100.0	134,443	-42,466	68.4
보 조 금	652,744	652,744	0	100.0	615,454	37,290	106.1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3,000	3,000	0	100.0	3,000	0	100.0

가. 세외수입

○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결산 세입과목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9,802만원) 대비 3.6% (355만원) 초과된 1억 157만원이 수납되었음.

1) 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은 자치구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으로, 2022년도 당초 본예산(53만 4천원) 편성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통해 1,032.4%(55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세입예산(604만 7천원)에 더하여 최종 58.7%(355만원)를 초과한 971만 3천원이 수납되었음.

* 자치구 보조사업 및 “예비군 육성지원”(수도방위사령부) 보조사업

○ 다만, ‘기타이자수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58.7%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 세입편성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으로, 이는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예산운영 행태로써,

- 보조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주기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필요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또한,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치구 등의 집행 노력 부족으로 해마다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편성된 예산이 자치구 등에서 차질없이 집행하여 사업 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비보조 사업에 기타이자수입 결산 내역 > (단위 :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율	이월액
2022	6,047,000	9,713,300	9,597,420	158.7	98.8	115,880
2021	563,000	1,897,550	1,897,550	337.0	100.0	
2020	499,000	365,360	361,850	72.5	99.0	3,510

2) 임시적세외수입(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치구에 보조한 2021년도 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반환에 따른 세입과목으로, 2022년도 당초 본예산(585만 8천원) 편성 후 이 또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통해 1,470.1%(8,611만 9천원)를 증액한 세입예산 9,197만 7천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2021년도 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707,329	615,352	91,977
1	민방위교육운영비	313,337	221,505	91,832
2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625	16,621	4
3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130	14,080	50
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63,237	363,146	91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추계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나.보조금(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본예산액(6억 4,954만 5천원) 및 간주처리 예산액(320만원)*을 합한 6억 5,274만 4천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및 “민방위 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간주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을지태극연습” 등 국가사무를 주로 운영하고 비상기획관의 2022년 세출예산액(29억 6천 8백만원) 중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21.5%(6억 5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국고보조금 운영 행태로써,
 - 국고보조금 보조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결산 세입과목은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액(3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1)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이 곤란하여 적기에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 비상기획관에서는 2021년도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지역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에 대한 전년도 국고보조금(300만원) 전액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세출예산(“보전지출” - ‘국고보조금반환’)이자 포함)에 반영하여 국고에 반환되었음.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세출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564,127 (×268,004)	564,127 (×268,004)	554,127 (×265,004)	10,000 (×3,000)	98.2%	코로나-19로 지역민방위대 경진대회 미 실시(10,00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상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교부액 (A)	집행액 (B)	불용액 (A-B)	집행율(%)	반환액	비고
사무관리비 (지역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	3,000,000	0	3,000,000	0	3,069,330	·원금 : 3,000,000원 ·이자 : 69,330원

○ 한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 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비상기획관은 2021년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당초 2022년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 및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본예산에 편성 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결산검사 등 의회의 지적에 따라,

- 비상기획관은 2022년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개선된 사례라고 할 것임.

라.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 결산 기준 최근 3년간 비상기획관 세입 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지속하여 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면밀하지 못한 세입추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과세입 또는 세입 결손의 발생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비효율적 재정운영 형태라고 할 것임.

- 비상기획관은 세입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국고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 규모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세입 확충과, 세입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합계	753,768	757,318	100.5	622,370	754,795	121.3	631,467	602,030	95.3
공유재산임대료	-	-	-	-	-	-	4,540	-	0
기타이자수입	6,047	9,597	158.7	563	1,897	336.9	499	362	72.5
시·도비반환금수입	91,977	91,977	100.0	6353	133,062	2,094.5	13,264	4,758	35.9
그외수입	-	-	-	0	1,159	순증	-	1,520	순증
지난연도수입	-	-	-	0	222	순증	-	-	-
국고보조금	652,744	652,744	100.0	615,454	615,454	100.0	613,164	590,064	96.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100.0	0	3,000	순증	-	5,326	-

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비상기획관의 2022회계연도 사업 중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두 개 사업의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3천 6백 만원)한 후에도, 같은 2개 사업의 잔여 예산현액(1억 5천 8백만원)에서 49.3%(7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통계목	당초 예산액	2차 추경	예산현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사업 합계	193,980	-35,610	158,370	78,097	49.3	
통합방위협의회의 등 운영	79,720	-10,610	69,110	30,598	44.3	·코로나19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실무회의 통합운영 등 축소 운영(4회중 2회 통합운영) ·안보자문회의(8회→4회) 축소 집행잔액 ·국외출장 미실시
사무관리비	56,270	-10,610	45,660	20,592	45.1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 미실시 및 화랑훈련 차년도 순연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25,000	89,260	44,030	49.3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강사 선발 미실시 ·교육 교재 및 영상 미제작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5,000	-25,000	0	0	0.0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비상기획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사축소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이는 서울시민을 위해 긴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의도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정운영 행태로, 비상기획관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비상기획관에서는 세출예산 결산 결과 2억 7천 6백만원(예산현액 29억 6천 8백만원 대비 9.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D=A-B-C)	불용률%(E=D/A)
총예산	2,968,378	2,689,296	276,082	9.3
3개 사업 예산계	620,311	424,988	195,323	31.5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69,110	38,512	30,598	44.3
사회복무요원 관리	461,941	341,246	120,695	26.1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89,260	45,230	44,030	49.3
1개 일반예산계	147,716	104,962	42,754	28.9
기 본 경 비	147,716	104,962	42,754	28.9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총예산		2,968,378	2,689,296	276,082	9.3	-
(6개 사업)	10개 통계목	618,241	391,863	226,378	36.6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45,660	25,068	20,592	45.0	코로나-19로 지속으로 인한 ·안보정책자문회의 축소 시행(8회→4회) 및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 참석률 저조 (총 11명중 평균 7명 참석) (14,362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회의로 통합운영(4회중 2회 통합, 5,952천원)
	국외업무여비	10,000	0	10,000	100.0	·국외출장 미실시(10,000천원)

사회복무요원관리	사무관리비	5,760	2,295	3,465	60.1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당초인원 45명 → 배정인원 34명)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공공운영비	6,510	4,301	2,209	33.9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당초인원 45명 → 배정인원 34명)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49,671	334,650	115,021	25.5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당초인원 45명 → 배정인원 34명)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	코로나-19로 지역민방위대 경진대회 미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47,760	12,003	35,757	74.8	코로나-19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시(집합교육 미시행) ·민방위 교육강사 미선발로 강사 선발비용, 강사 위촉장 및 강사증 제작비용 등 미집행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시로 교육교재 및 영상제작 비용 미집행
	행사실비지원금	2,400	0	2,400	100.0	코로나-19로 민방위창설기념 행사 미실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교육여비	160		160	100.0	코로나-19로 교육 미실시
기본경비	국내여비	40,320	13,546	26,774	66.4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및 대면회의 지양에 따른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발생

○ 비상기획관의 2022년도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총 17개 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포함) 중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 규모(2억 7천 6백만원)의 86.2%(2억 3천 8백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기본경비

- 이 중에서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4억 6천 2백만원) 대비 26.1%(1억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2억 7천 6백만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은 사회복지무요원 행정지원 수요가 감소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투입이 시급한 필요 사업에 적기 재원을 투입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예산운영 행태이고, 더구나 2년 연속 많은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상기획관의 분명한 개선방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통계목별 20% 또는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의 10개 통계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규모는 총 집행잔액(2억 7천 6백만원)의 82.0%(2억 2천 6백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2), 사회복지무요원 관리(3), 민방위대 교육훈련-민방위 교육운영비(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2), 교육여비(1), 기본경비(1)

- 이 중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통계목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국외업무 여비’(1천만원),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의 ‘사무관리비(1천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240만원), ‘교육여비’(16만원) 등에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통적인 사유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국외업무 여비, 민방위 교육장 운영비·교육여비 등 집행·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제한되었고, 특히 국외업무여비(1천만원)의 경우는 예산 감액조정 없이 결국 전액 불용시킨 것은, 2022년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대처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4천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4천만원)’를 편성한 바 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보조금 예산현액(8천만원) 대비 5.5%(4백 4십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본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민	소계	80,000	80,000	4,417	5.5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40,000	1,061	2.7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40,000	3,356	8.4

- 한편,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면, 집합·행사성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4개 추진사업에 연인원 1,505명(평균 376명)이 참여하는 집합·행사성 프로그램을 이행하였는바, 비록 마스크

1)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행사 개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항 목 별	참석인원	장소	추진일자
6.25전쟁 기념행사	550명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6.24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525명	전적지(서울·파주지역)	9~12월(5회)
여군창설 기념행사	230명	춘천, 철원지역 일대/ 공군호텔, 롯데타워전망대 등	6.8, 9.1(사전행사), 9.6(본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200명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21.

- 출처: 2022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또한 비상기획관의 본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조금 중 인건비 등 계좌입금 항목(2천 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액(5천만원) 중 전용카드(제로페이) 결제 규모(2천만원, 40%)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22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금액 대비 70% 이상 의무적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22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추진협약서」 제6조에서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등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비상기획관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에 편성된 예산액(746천원) 대비 278.2%(2,075천원)를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하였고,
 - ‘행정장비수리비(토너 등)’ 예산액(2,250천원) 대비 271.0%(6,098천원)를,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은 예산액(1,423만원) 대비 115.5%(16,432천원)를 집행하는 등,
 - 기본경비 산출기초별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예산 집행 행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7,226	24,605	△7,109	142.8
	기본사무용종이류	746	2,075	△1,329	278.2
	행정장비수리비(토너 등)	2,250	6,098	△3,578	271.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	14,230	16,432	△2,202	115.5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행태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배정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배정 예산액의 현실화를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